

2021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참가신청서 | GLOBAL HEALTHCARE WEEK 2021

2021.11.25.(목)~11.27(토)

참가신청 마감일 : 2021.10.29.(금) 접수일자 : . . .

1. 참가업체 및 전시품목

구분	국문			영문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우편번호	-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담당자	성명		직위		이메일
	전화		팩스		휴대폰
회사소개					
전시품목					

2. 부스 및 부대시설 신청내역 (설치비 및 사용료 포함)

구분	신청내역	신청금액	단가(부가세 별도)
조립부스 (전시면적+조립부스)	()개 부스	원	1,800,000원/부스
독립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개 부스	원	1,400,000원/부스
전기	단상 220V (60Hz)	KW	원
	삼상 220V (60Hz)	KW	원
	삼상 380V (60Hz)	KW	원
	24시간용 (220/380V)	KW	원
전화	대	원	80,000원/대
급배수	개소	원	150,000원/개소
압축공기	개소	원	150,000원/개소
LAN(인터넷연결)	PORT	원	100,000원/PORT
소계		원	
부가세(10%)		원	
합계		원	

3. 납부처: 부산은행 320-13-000045-2 예금주: (주)벅스코 (*유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금증 사본 각 1부)

당사는 2021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의 참가규정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참가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2021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개인,법인),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1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벡스코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 신청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 및 공동주관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한다.
2. 전시자는 참가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 총액의 50%를 납입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이미 신청한 부스 및 부대시설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 및 공동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참가비 납입

1. 기본 참가비는 독립부스일 경우 부스 당 1,400,000원으로 하고, 조립부스일 경우 부스 당 1,800,000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시 부스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합계액의 50%를 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2021년 11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부스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4조 참가비 내역

참가비에는 전시장소, 24시간 외곽경비, 통로청소, 홍보 등이 포함된다.

제5조 전시부스 배정

1.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 및 계약금 입금순, 국적, 전시품목, 신청 규모 등 전시회 참가실적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 면적 및 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배정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주관자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동 변경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설치 및 철거

1. 설치 및 철거는 주관측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 행사 종료시간 이전에는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제7회 주관 측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관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부스 설치 등에 관한 자료는 물론 2021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 측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부스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

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고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시자는 전시부스 내 바닥, 천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 없다.

제9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모든 자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확보하여야 한다.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전시부스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위험부보

전시자는 전시기간, 설치 및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정부스 면적 내의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관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될 경우, 입금한 참가비 전액 환불.

제12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전시 계약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전시자는 반드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하여야하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신청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전시개시 60일 이내에는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불가피하게 참가를 포기할 경우 또는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전시자는 전시회 신청부스 참가비 중 50%또는 부스 축소분의 50%를 현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하며, 30일 이내 취소 또는 규모 축소는 참가비 80%또는 규모 축소분의 80%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을 차감하고 반환한다. 모든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제13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된다.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벡스코의 제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